



가스보일러 시공시 하자담보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항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가스보일러 하자담보기간:1년]
-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①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관련조항

●서울시 공급규정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사용기기를 설치(교체를 포함) 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 요청일로부터 1일이내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경기도 공급규정

제15조(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시설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제20조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급전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를 교체한 종전의 수요자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 ③ 가스보일러 등(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한 자가 관밀연결공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제1항의 시공기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